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創意 ● 奉仕 ● 誠實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漁港공사「隨契」조건大幅強化

豫會令改正 案立法豫告

旣存條項삭제등으로

재무부는 예산회계법시 — 행령 개정안에서 수의계약을 —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조항을 수정, 어항시공업계와 건설업계에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재무부가 지난 7월6일 입법예고한 예산회계법 시행령개정안은 현행의 수의계약을 명시한 조항중에서 동일구조물공사의 경우 잘래 하자책임무분이 관련하여 전차(前次)시공자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을 뿐더러 「작업상의 혼란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는」라는 기존 조항도 삭제시켰다.

재무부의 이같은 초치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에 따라 오해소지가 있는 「동일현장에 2개이상 업체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한 수의계약사유를 폐지한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 조항폐지의 당위성에 언급, 객관적으로 동일현장의 구분이 어려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수백km씩 계속되는 고속도로 공사나 하천의 댐공사 등이 그 예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달청은 수의계약의 성질상 일반인의 오해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작업현장에 인접한 다른 공사를 분리,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공사를 맡은 2개업체 모두 자재의 운반이라든가 보관 등의 작업일정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동일(인접)현장에 대한 분리발주의 길을 터놓으려는 재무부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달청은 또한 「국회 국정감사반마저 수의계약을 이해한 마당에 이제와서 관련법규의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무부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施工業界서크게反撥

漁港공사特殊性 전혀 反映안돼

瑕疵責任區分곤란, 工事費도 더욱늘어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7월6일 재무부의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 회원사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국어항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이를 재무부에 통보할 예정인데, 한국어항협회는 재무부의 「예회령」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에 독자적으로 의견을 제시, 「예회령」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망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가 적시한 의견과 이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견 1】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1호「가」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일구조물 공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동일구조물공사의 경우에는 잘래 하자책임무분이 곤란하여 전차시공자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으로 동일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도 어항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단서규정을 삽입 요망

【이유】

가. 어항공사의 경우는 공사 성질상 충공사기간이 10년내지 2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연여건 및 항세변화 등으로 구조물 변경 가능성이 큰 공사로서 원천적으로 공사기간 및 총사업내용을 확정하기 불가능하여 장기계속계약체결을 못하고 분할발주가 불가피함.

나. 어항공사의 경우에는 수중공사로서 수심이 깊거나 지반이 연약하여 당해연도 축조가 불가능하여 상부·하부로 매년구분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질적인 갑톡이 어려운 수중공사의 경우 전차 하부시공에 부실이 있을때 상부시설마저 피해를 입게됨에 따라 막대한 국고손실발생이 우려됨.

다. 시공자가 바뀔경우 하자책임을 당해연도시공자가 승계함에 따라 시공자는 하자책임의식이 저하되며 특히 어항공사는 사실상 갑톡이 불가능한 수중공사로서 육안식별이 어려워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해저기초공사부실로 인하여 기설구조물의 전체 피해발생을 초래함.

라. 장기계속계약된 공사인 경우에는 하자책임기간이 있으나 하자승계조건으로 매년계약을 체결할때 하자책임기간이 사실상 없음으로 하자책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저하되고 하자승계시 하자기간(4년)에 대한 보증금액이 계약연도 실공사금액보다 상회하는 불합리한 계약이 될 수 있음.

마. 매년 4년간의 하자책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하였을 때 하자책임이 승계되는 전차공사(4년간공사)는 대규모이나 당해연도 계약대상공사는 소규모일때 전설업체의 입찰참여기피현상이 초래됨.

【의견 2】

현행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1호「나」의「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는」라는 기존조항도 삭제시켰다.

漁港協會 反對陳情

業界의견도 수렴

事前建議無視「실망」

焦点

어항인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7월6일 재무부 공고 제89—20호로 입법예고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법령(안)에 의할 것 같으면 그동안 관심과 쟁점의 대상이었던 수의계약사유에 관한 내용이 끝내 어항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개정, 예고됨으로써 큰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실 어항협회는 만에 하나 혹시 이런 사태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이미 지난 3월8일 어항공사계약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어항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철회 내지는 적용완화조치해 줄 것을 관계요로와 해당 주무부처에 간곡히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내용이 전혀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된 사실에 대해 아무래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어항인 모두는 이번 시행령개정을 엄연한 관계부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질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어항인 모두가 바로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관계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 조문을 찬찬히 훑어 읽어 보노라면 곳곳에서 행정편의주의와 지나친 보신주의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사유를 검토해 보면 먼저 동일구조물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종래 최소한의 사안별 고려대상이었던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비록 동일구조물공사이긴 하나 공사와 공법의 특성상 용인 되어오던 어항공사의 수의계약사유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가능했던 수의계약사유 조항」이 이번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삭제돼 버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산을 사들이고 많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남도·오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어항공사를 계속계약에 대한 불안한 불확실성까지 감내하면서 선뜻 떠맡을 업자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지 자못 궁금하다.

문제는 이같은 법령개정이 이른바 5공시절 가장 큰 비리와 폐해의 근본이었던 수의계약제도의 악몽(?)에 연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빈대 한 마리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지금은 과거처럼 미분화(未分化)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체적이고도 획일적인 시대가 아닌 기능별, 업종별,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다.

불충한 제도가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보완으로 족할 일이지 결코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발상이 난비하는 가운데 모처럼 일었던 수산대국의 의욕과 어항인의 단합된 모습이 하릴없이 스러져간다거나 고래싸움에 끼어든 격이 되어버린 어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법령의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관계부처도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어항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전체 어항인의 이름으로 관계부처의 신중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이의 시정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漁港공사工法上특수성勘案해야

石山확보·落島등地域性도考慮를

法令확정까지 時間남아…愼重한 處理기대

가. 어항공사의 경우는 재료가 대부분 석재임으로 석산확보가 않되면 공사는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매년 전차시공자가 아닌자가 동일현장에 계약시공하게 될때 전차시공자가 보유하여 사용하던 근거리의 석산양도(사용)를 불응할 경우 타시공자는 별도로 원거리의 석산을 개발, 석재를 확보하여 공사해야 되므로 공사단가가 막대하게 증대되고 매년 전차사용하던 석산의 복구에 따른 국고의 낭비는 물론 다른 석산을 개발할 때 해안, 도서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토석채취 허가기관에서 매년 별도의 석산에서 석재채취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원거리 석산을 개발했을 때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와 해상석재운반으로 인한 공사시행에 차질이 초래됨.

나. 어항공사는 공사위치가 대부분 도서벽지로서 공사규모가 작고 현장이 협소하여 공사용필요토지(자재적치장, 장비수리 및 대기소 현장진입도로개설)를 전차시공자가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 타시공자는 공사현장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업체간 분쟁야기, 사회물의조성, 지역인부동원불가 등으로 시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태풍피해 등으로 전차공사이월시 당해연도공사 추진이 곤란함.

다. 어항공사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중장비가 일반토목공사(육내공사)와는 달리 예인선, 바—지선, 크레인선, 준설선 등 해상 중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중장비 이동시에는 장시간 해상예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며 과중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중복투입과 단기사용을 위하여 이와같은 장비투입은 비경제적임.

라. 사용조작회수 및 내구연한이 긴 재료 즉 이형를 록제작용 컨푸집, 콘크리트 베치플랜트, 공사용가설물 등 각종자료를 중복제작과 단기간 사용하고 폐기내지 시공사와의 불일치로 사용하지 못할때 엄청난 국가적낭비를 초래하고 작업장 및 제작장, 진입보 등을 시공자부담으로 시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시공자부담이 가중됨.

漁港基盤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建設業면허開放키로

市場개방, 地方自治制에 對應

資本金등 條件은 強化

專門업체 1億~3億원으로

정부는 지난 7월18일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 시행했다.

지난 74년이후 15년간 동결했던 건설업면허를 개방한 이번의 건설업법 시행령은 자본금 규모를 토건업은 종전 2억원에서 10억원, 토목 또는 건축업은 1억원에서 5억원, 특수건설업은 5억원에서 10억원,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3천만~1억원에서 1억~3억원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기술인력보유한도도 토건업은 종전 10명에서 20명, 토목 또는 건축업은 4명에서 8명, 특수건설업은 5명에서 10명,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3명에서 5명으로 종전보다 기술자보유인력을 2배로 강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체 난립과 과다경쟁을 막기위해 신규면허를 동결했으나 국내 건설시장개방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건설업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며 9、10월 두달간 심사를 거쳐 11월경 면허를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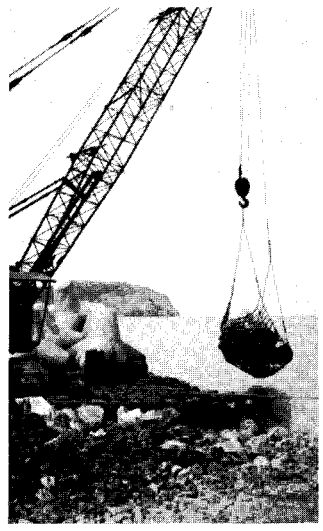

甘川港 遠洋부두

8個원양業體서 法人體구성推進

수산청은 지난 7월4일 갈천항 전용부두 민자유치 건설방안에 대한 회위를 열고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 이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산청에서 김갑부시설국장과 조홍제어항과장, 해운항만청에서 이갑숙항무과장 그리고 한국원양어업협회에서 김홍수전무와 갈천항 건설에 참여할 뜻을 비춘 동원, 사조, 오양, 대림, 신라, 동아, 삼호, 한성 등 8개 회원사가 참석했는데, 갈천항 원양어선 전용부두 개발을 한국원양어업협회가 주관, 8개 회원사가 참석한 뒤 이 법인체에서 갈천항건설을 맡아하기로 했다.

釜山港개발構想 學術大會서提示

부산항은 앞으로 항만기능을 특화, 북항은 외국무역화 물류컨테이너 및 잡화)전용

福屋수산청 漁港部長

日本漁港施策밝혀

일본 수산청 福屋 어항부장은 일본경제신문 高田씨와 가진 「앞으로의 어항행정방향」에 대한 인터뷰에서 어항을 어촌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등 옥래전부터 구상해오던 본래의 어항건설을 천명, 어항건설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통해 밝힌 일본의 어항시책이다.

▲문:옛날에 비하여 최근의 어항정비사업은 단순한 생산기반정비 뿐만아니라 어항·어촌환경정비와 유어(遊漁)시설 등 시책의 시점이 변하여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구상은?

▲답:예로부터 어촌의 생활환경을 포함한 어항정비를 구상하였으나 종래는 무엇보다 어선의 증가와 대형화추세에 어항정비가 이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방파제를 1m라도 길게하여 충족률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였으나 현재는 다소 영유가 생겨서 어느정도의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본래의 어항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

▲문:옛날과 지금의 틀리는 점을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답:옛날에는 방파제를 만들고 다음에 안벽을 그 다음에 육상시설용지가 만들어지고 하여 안벽이 완성되면 매우 기뻐했으나 지금은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수준이 향상되고 어항정비의 방법이 변하여 시대에 맞는 요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어촌의 후계자 문제·결혼문제가 있다. 어업의 진흥이 계획되어도 젊우할 집이 없고 생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후계자나 결혼상대자도 없어진다. 따라서 1988년도부터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문:어항기능이란는 관점에서 어항정비의 방법은?

▲답:선류장(船溜場)은 어민주거지와 바로앞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시장이나 유통관계를 생각하면 반드시 어항시설이 바로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양식업이 성하기 때문에 집앞에 선양장(船揚場)이 있는 것을 바랄 것이므로 어촌의 실태에 맞는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해양레저시대에 맞추기 위하여 유어선문제에 대하여는?

▲답:어선등록수는 약 40만척으로서 이중 어항이용어선은 약 30만척, 기타 해양레져에 관련된 많은 유어선이나 요트 등이 어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간단하게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어업과 공존을 꾀하는 어항이용 조정을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문:이상어항·어촌건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이상어항·어촌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다만, 어장의 관계 어선의 계선(繫船)과 양륙·유통을 고려하고 또 주민의 환경이나 해변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항행정을 추진코자 한다.

따라서 어항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메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원(地元)에 필요한것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 제출해 주면 된다.

▲문:이제는 어항관계사업을 어촌의 핵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다데?

▲답:어항시설은 물론 어촌의 상·하수도, 도로, 녹지, 광장의 정비, 주택용지의 조성 등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메뉴를 잘 조합하여 크게 활용하여 지원에 맞는 이상어항·어촌건설계획을 제출해 주도록 기대하고 있다.

漁港정비長期計劃促進등 日關東·東海지구漁港大會

제32회 관동·동해지구 어항대회가 茨城縣어항협회주최로 지난 6월15일 오후 茨城市체육관에서 茨城、千葉、東京、神奈川、靜岡、愛知、三重의 各都縣의 어항관계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飛田謙藏 茨城縣어항협회장의 주최자인사에 이어 茨城縣知事、수산청장관、曾根田都夫 참의원의원、佐川淸一 茨城縣의회의장、佐藤稔夫 전국어항협회장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상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①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 예산증액 확보.

②둘째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과 어항환경정비사업의 확대 강화.

③이도(離島)에 있어서의 어항의 정비촉진.

④제4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촉진과 1990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6個港區域확대 指定내용을 變更

지난 6월30일 농림수산성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148회 어항심의회는 6개항에 걸친 구역확대를 위한 어항의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했다.

지정내용이 변경된 어항은 ▲북해도의 本泊, ▲岩手縣의 根白, 船尾, 重茂, ▲三重縣의 阿曾浦, ▲佐賀縣의 戶戶里 이다.

漁港표어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지공간확보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및 부산신도심의 개발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14일 동아대에서 열린 한국항만경제학회 제5차 학술발표대회에서 해운산업연구원 趙鎭行연구원의 「2천년대를 향한 부산항 개발구상」발표를 통해 제시됐다.

이 구상에 따르면 부산항의 개발은 첫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부합돼고 둘째 해운항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장기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며 셋째 항별로도 특화하여 각 기능을 부여하고 넷째 장래 항만개발을 위한 적정입지를 확보하는 등 4가지 방향의 토대위에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른 항별 기능은 북항 남항외에 갈천항은 북항의 보조항으로 고철 양곡시멘트 기타 연안화물 및 원양어업기지로 활용하고 다대항은 목재전용항 및 어항으로 각각 특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漁港피해最少化

災害예방對策지시

수산청은 여름철 태·폭풍기에 즈음, 어항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감독관과 시공사 등에 시달했다.

수산청은 이 지시에서 태·폭풍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기상예보를 항시 청취하여 피해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과 선단부 등 주요공정을 끝내고 피해취약구간을 응급조치하며 자재와 장비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해외어항단신

日水産廳長官에 京谷昭夫씨

田村元중의원의원(어항정비촉진의원연맹 회장)은 지난 6월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近藤元次중의원의원(어항의련 간사)은 지난 6월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농림수산대신에는 堀之內久男씨가 수산청장관에는 京谷昭夫씨가 임명되었으며 전 수산청장관 田中씨는 농림수산부 사무차장으로 영전되었다.

漁港 표어

旅客船接岸시설은 港灣廳서

수산청은 어항전설이 여객선의 접안시설업무도 관장하는 줄 잘못 알고 각종 시설에 대한 설치를 진정하는데 따라 어항전설이 어업기반시설에 국한하고 있음을 밝히고 교통부나 해운항만청의 소관업무와 관련된다고 했다.

수산청은 어항법에 따라 어업기반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 등 어항시설을 건설하므로 여객선 접안을 위한 부두전설은 할 수가 없다.

動靜

인사

▲수산청은 지난 7월1일자로 성기헌 협동조합과장을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소장으로, 김홍철 협동조합과 조합계장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승진발령하고 종우연 행정관리담당관을 협동조합과장에 전보 발령했다.

▲수산청은 지난 6월30일 수산청 및 산하기관의 장기근속자 퇴임식을 수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동배 수산청장은 정상화 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 허종우 수산진흥원 진해내수면연구소장 등 4명의 퇴직자들에게 그동안 수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관해온 장기근속퇴직자 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훈장과 포상을 전수했다.

황덕환 수산청 어항과 근무(58세) 토목기사는 27년5개월로 근정포상 수상했다.

▲이회수 수산청차장은 지난 6월28일 국립수산기술훈련소와 기장으로 이전한 국립수산진흥원을 순시했다.

회의참석

▲박광훈 수산청기획관리관은 지난 7월8일 제주도 도청에서 열린 제10차 시·도 경제협의회에 참석했다.

평생회원

▲이수문씨(수산청 어항과)

회비납부

단체:분담금

취임

▲주식회사 서해(고세진 회장)

▲주식회사 삼전사(정덕용 사장)

〈연회비〉

▲신영태씨(농경연 책임연구원)

기금

▲세기건설 주식회사 양성후 회장과 주식회사 대영엔지니어링 정효영 전무이사는 여름호 「어항」지에 게재한 원고료 전액을 협회회관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

내방

▲이동섭씨(삼척경찰서 서장)

▲배계남씨(수산청 사무관)

▲임승언씨(한국항공상무감사)

▲송영춘씨(외환은행 암사동지점장)

▲차주환씨(경원대학교 교수)

▲김달재씨(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송득호씨(남진건설 주식회사 업부이사)

▲이원인씨(세양상사 대표)

▲권석호씨(한국항공 항무영업부 차장)

▲구일산업(주) 상무직에 있던 장경남씨가 지난 7월1일자로 덕우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한편 장경남 덕우수산사장은 지난 7월13일 한국원협 회의실에서 1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대서양트롤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경남사장은 수대경영학과(21회)를 졸업, 그동안 수산청 공직을 거쳐 지난 70년 구일산업에 입사 지금까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등 원양어업 실무에도 밝고, 앞으로 업체운영의 새로운 경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올해漁港建設 계획대로順調

34곳對象港

颱風進路圈 工程마무리

올해 어항건설이 계획공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태풍진로권 어항의 주요공정은 이미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보고됐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대상 34개항 모두가 당초 계획대로 공정이 순조롭다.

移越사업도순조 4個港5件남아

올해로 이어진 지난해 어항사업 12개항 13건 가운데 최근 소흘산도항과 구계항 등 2개항의 준공이 확정됨으로써 지난해 어항건설 이월사업은 방어진항 등 4개항 5건이 남았다.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사업 가운데 금진, 장호, 위도, 신수, 지세포, 맥전포항 등 6개항은 준공됐고, 방어진, 어란진, (2건), 마량, 국동항이 공사중이며, 이번에 소흘산도와 구계항이 준공됐다.

丑山港보수곧着工

수산청은 축산항 물양장 보수공사를 지질조사가 끝나는대로 곧 착수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축산항에서 11공을 시추하는 등으로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항 지질조사는 (주)동원토질(대표 장인섭)이 수급, 지난7월3일 착공했으며, 8월말까지 완료된다.

漁港보화

2輯곧着手

11月末까지 發刊할計劃

수산청 수탁사업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제작한 「한국의 어항」화보를 수산청은 해당 어항개발계획과, 어항관리, 어항환경정비 사업, 주변의 지형지물파악 등 업무자료로써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앞으로 1·3종 항 모두를 순차적으로 항공사진 촬영하여 화보를 제작할 계획인데, 2차과업으로 전남9곳과 제주4곳 등 총 13곳에 대한 화보를 11월말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2차로 발간될 「한국의 어항」에는 전남의 ▲안마 ▲원평 ▲서망 ▲서거차 ▲어란진 ▲추자 ▲신양 ▲소안 ▲청산도와 제주의 ▲도두 ▲애월 ▲모슬포 ▲위미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高世鎭議員、議政활동活潑

經濟活性化주력

民政黨 濟州市 委員長被選

고세진 의원(주식회사 서해 회장)이 지난 7월2일 민정당 제주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4·26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13대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고세진 의원은 민정당에 입당, 그동안 국회 내무위 청원심사소속 소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위원 그리고 국회통일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등 초선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세진의원은 출신구인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143회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역설, 관계부처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한편, 제145회 임시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정치적인 현안과 사회각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욕구분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자립도 문제,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사항 등 현실적인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내무장관에 질의하는 등 국정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한 고세진 의원은 제146회 임시국회 건설위원회에서 탑동공유면적 매립문제와 관련, 탑동개발이익을 제주시에 환원해 줄 것 등을 국회에 청원제안하는 등 출신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에 남다른 의욕을 과시했다.

민정당 제주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에서 고세진위원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物·人·

第2回 漁港사진公募

10月末까지 韓國漁港協會로 提出

21世紀 先進漁港으로의 발돋움

21세기를 향한 선진어항으로의 발돋움을 촉구하고 어항개발을 촉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항사진을 공모합니다.

본회 회원과 어항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어항사진공모에는 어항과 관련이 있는 흑백이나 칼라 4×5이상의 규격의 사진을 출품하면 됩니다.

출품품을 원하시는 분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직장·성명을 게재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어항협회로 제출하시길 바라며, 작품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격: 본회 회원 및 어항관련 종사자

■출품대상: 어항과 관련이 있는 작품

■종류 및 규격: 흑백및 칼라 4×5(이상)

■출품점수: 제한없음(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성명)

■출품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출품기한: 89년 6월~89년 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①심사: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선행

②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시상: 89년 12월중(별도개별통지)

■기타: 출품작품은 본회 귀속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한국어항협회

韓國의漁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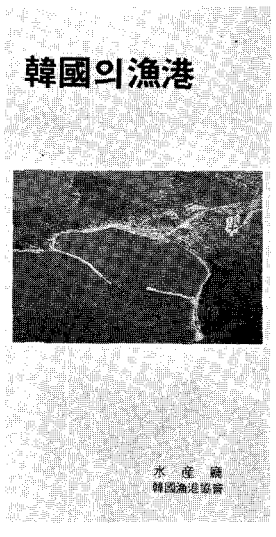

「韓國의漁港」會員에게 配布

▲한국어항협회는 수산청의 수탁사업으로 제작한 「한국의 어항」화보를 각 회원사 및 회원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발간 배포했다.

自然災害발생시 被害額算定기준 災害대책本部책정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월3일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발생시 재해업무대책에 활용키 위해 「89년 피해액 산정기준」을 확정, 관련부처와 산하 단체에 발간 배포했다.

水産廳소관15件 行政規制改善案

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각종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각부처의 규제사항 8백49건 개선안 중에는 농림수산부 소관사항이 97건, 산림청 소관47건 그리고 수산청 소관사항 15건 등인데, 이 3개 부처의 업무중 규제사항폐지는 78건, 완화29건, 간소화조치가 15건, 지방행정기관 위임이 7건, 민간위임 2건, 규제강화 1건 그리고 기타조치가 27건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산청분야의 주요개선사항은 ▲수협사업계획·수지예산의 책정·변경 인가 폐지 ▲어선등록에 따른 민간인 신원조사 폐지 ▲주요 대형해어업의 허가 및 조정 권한 수산청으로 이관 ▲섬진강 연안 채포금지구역 폐지 ▲잠수기 어업허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遠洋漁業, 水産物輸出入業 ◎

德宇水産株式會社

代表理事 張 經 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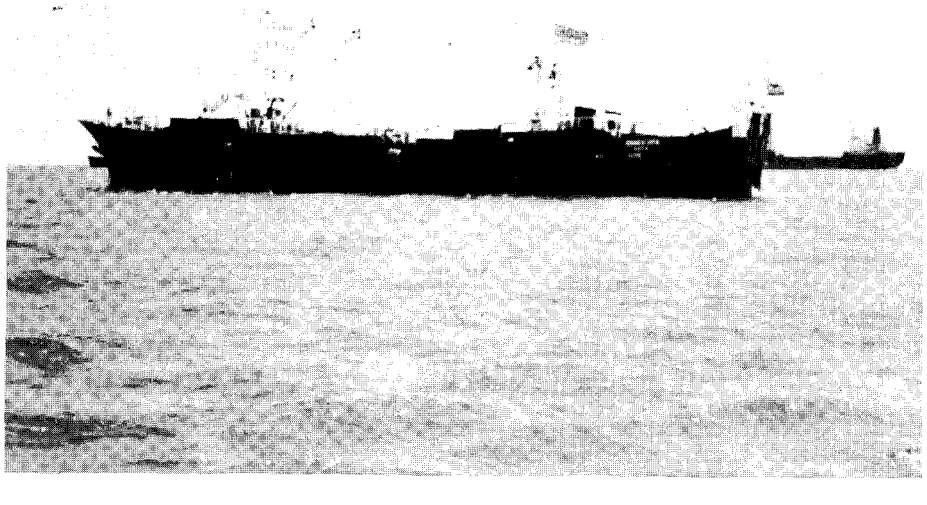

本 社: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1街 32番地
(효덕B/D 707號)
TEL. (02)757-3757~8 FAX. (02)757-1817
釜山事業所: 釜山直轄市 西區 忠武洞1街 23-7番地
(동해B/D 307號)
TEL. (051)243-6056 FAX. (051)242-4135
海外支社: TEL. (28)-27-6552, 6998
TELEX. MAVAC 95324
FAX. (28)-22-0537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

全國規模로 계획할 때

經濟사회發展과 國土綜合開發계획과 調和를…

1. 전국적 규모의 계획

전국적어항계획은 각각의 어항계획을 조정하여 종합한 계획으로써 지방단계의 계획과 국가단계의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단계에 있어서 어항 계획은 어항개발계획과 더불어 어항에 관련된 국가계획으로써 사회자본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제사회발전계획이 있다.

어항개발계획은 각각의 어항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전국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국적규모의 계획책정 순서

가. 수산물의 수요예측

장래의 인구동태, 일인당의 단백질 섭취량, 축산물과 수산물의 취급 비율 등에서 수산물의 수요예측을 행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생산을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또 얼마나 수입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 공급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예측은 원양, 연근해 양식 내수면 등 어업구분별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산업의 장래전망

수산업의 제지표(諸指標—생산량, 어선세력, 경영업체 수, 종사자수 등)을 과거의 추이, 수요전망 등을 고려 하여 장래를 전망한다. 과거의 추이에서 장래의 치(値)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주로 시계열법(時系列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과거의 추이 뿐만 아니라 현재 예상되는 변화, 수산업 밖의 정책을 반영시켜 추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건설계획의 목표설정

어업의 근거지로서 항만법에 의한 어항, 기타 해안지 등이 있으나, 수산업 제지표에 의해서 장래전망이 나오면 이중 얼마를 어항에 투자 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추이,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건설수준의 목표(계선안(繫船岸)충족률의 목표 등), 계획기간(목표연도) 등을 결정한다.

라. 목표달성에 필요한 투자액의 산정

건설계획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투자가 필요한가를 산정한다.

산정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어항의 양륙목표는 어항의 사회자본 축적관계에서 산정.

어항은 사회자본 중에서도 생산기반적 성격이 강함으로서 어항의 양륙량과 어항자본의 축적사이에는 공업의 생산고가 생산설비 관계와 같은 등식이 성립됨으로, 양륙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항자본의 축적량에서 투자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2) 어항의 자본 장비 축적과 어항의 사회자본 축적 관계에서 산정.

어업의 자본장비(어선·어구 등의 자산)와 어항의 자본축적량의 비율을 과거의 추이에서 어느정도 했느냐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필요한 어항의 자본 축적에서 투자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3) 등록어선의 목표와 건설수준의 목표에서 산정.

등록어선 1톤당 필요계선안(繫船岸) 연장은 시간적으로 볼때 대개 일정치가 산출되며, 등록어선의 목표 톤수에 일정치를 곱하면 계선안의 필요연장이 구해진다. 이 필요연장과 계획수준의 목표(계선안충족률의 목표)에서 계선안의 건설연장이 구해진다. 여기에 계선안 1m당 건설비(방파제, 용지 등 어항시설 전부를 포함한 종합단가)를 곱하여 필요투자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4) 기타 방법

사회자본축적 전체에 어항자본 축적이 점하는 비율에서 구하는 방법 등도 있다.

마. 계획방침의 결정과 채택조건의 설정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장래전망 등을 고려, 설계방침을 결정한다.

따라서 방침결정에 의해 건설 대상 어항의 채택조건을 설정한다.

이 채택조건은 그 시기의 사회정세와 수산업정세 등에 의해서 변화한다.

낙·지

건강하게 오래 살자나

쫄깃한 맛에다 단백질도 18%나

낙지는 문어류에 속하고, 연체동물 중에서는 오징어류처럼 고등한 동물이다.

낙지는 몸길이가 약 60㎝에 달하고, 살이 연하며 맛이 좋다. 등쪽에 불규칙한 담황색인 혹 모양의 돌기가 산재하고, 눈 주위에는 수개의 유질극이 있다. 각 발은 길이가 다르며, 특히 좌우 첫번째 발이 길며, 몸통 길이의 5배에 달하는 것이 있다. 낙지는 4~5월에 산란하고, 우리 나라의 남해에서 서해까지 널리 분포하는 수산업상 중요한 종류이다.

생선을 말려 건제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어류는 자숙한 후에 가공한다. 수입할 경우도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煮熟)한 것을 냉동한다.

독특한 근육조직을 갖고 있고, 근섬유에 방향성이 없다. 몸 전체가 탄력이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성분적으로는 오징어류와 흡사하다. 수분함량이 비교적 많아 80%를 차지하며 단백질이 18%, 지질함량은 적어 0·5%정도 된다.

한편 유리아미노산, 조성을 보면 히스티딘, 알기닌, 타우린, 프로린, 글리신 등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종류는 특유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 조직의 수축이 심하고 여물게 되기 쉽다. 지방함량이 적고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깔끔한 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조미료를 자유로이 써서 요리하기 쉽다.

낙지볶음

⊙재 료

낙지	500g
붉은고추	50g
풋고추	50g
양파	80g
당근	½개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소금	1작은술
마늘다진것	1작은술
발효조미료	⅙작은술
콩기름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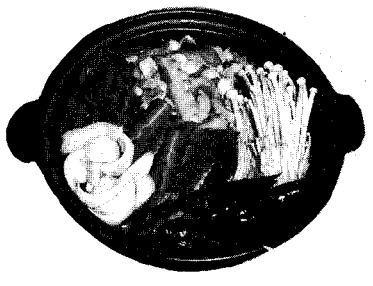

■만드는법

①낙지는 눈을 떼고 내장과 먹물통을 제거한후, 소금물 넣어 거품이 나지 않고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바락바락 주물러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후 5㎝ 길이로 썬다.

②붉은고추와 풋고추는 꼭지를 따고 비스듬히 7㎜간격으로 썰어서 씨를 털어낸다.

③양파는 2등분하여 7㎜간격으로 썰어놓는다. 당근은 반으로 잘라 납작하게 썬다.

④후라이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살짝 볶은 후 양파, 붉은고추, 풋고추를 넣어 볶는다. 익으면 낙지를 넣고 볶으면서 소금, 발효조미료, 참기름을 넣어 간을 하여 낸다.

※낙지는 볶아놓으면 물이 생긴다. 야채를 볶은 후 낙지를 넣고 볶아야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 좋다. 또한 오래 볶으면 질겨진다.

"내돈 내가 쓰는데…"

극단적 利己主義, 이대로 좋은가

해묵은병폐…物質萬能세태의 한 斷面

모두를위해 다같이 아껴써야 쉽게굴러온돈 쉽게 도망친다

♣生·活·經·濟

언제부턴가 분에 넘치는 사치·향락풍조가 우리 사회의 일각에 젖어들면서 "내 돈 내가 쓰는 데…"식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머리를 쳐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남이야 뒷간에서 낚시질을 하든 말든…" 웬 참견이냐는 식의 이 맹랑한 생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랄 수도 있으며 근년에 와서 그 정도가 심해져 가는 물질만능 세태의 한 단면이랄 수도 있다.

이 철저한 자기본위의 생각은 돈을 쓰는 일 말고도 돈을 버는 일에서, 그리고 의·식·주 전반에 걸쳐 "남이야 어찌되었든…" 괜찮다는 생각으로 번지고 있다.

개인의 욕구충족만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이 비뚤어진 경제의식은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사회의 공기(公器)이며 공유물(共有物)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다.

또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의 원리를 잘못 받아들인, 터무니없는 이기주의적 독선(獨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서구공업사회는 청빈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청교도 정신과 그 윤리 위에서 개화될 수 있었던 것이지, "돈이면 지옥에라도 간다"는 식의 무분별한 황금만능사상이 만들어낸 사회가 아니다.

만의 하나라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사회의 내일이 어찌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극장안에서 어떤 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약간 몸을 세운다고 하자. 그 뒤에 앉은 사람은 그보다 더 몸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뒷사람은 일어서야 무대가 보일 것이며 나중에는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무대는 전과 같이 보이는데도 모두가 일어서야 하는 곤욕을 치루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선(善)은 그것이 전체의 선으로 통할 때에만 참다운 선이 될 수 있다. 나만이 잘 살고 나만이 호사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모두가 궁핍해지고 다같이 헐벗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무릇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땀흘려 일한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정한 돈과 재화는 말할 나위도 없고 구슬땀을 흘려 번 돈도 그 물건과 서비스를 사주는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부(富)의 사회환원」이라는 얘기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적 개념을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땀방울 젖은 돈이 대접받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벌어서 제가 쓴다지만 사치·향락에 탕진되는 돈이 자꾸 나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쉽게 굴러 온 돈은 쉽게 도망친다'는 속담도 있듯이 거저 번 돈일수록, 그리고 일하지 않고 번 돈일수록 그 돈은 찰나적 향락·호사를 위해 내던져지기 마련이며 이렇게 쓰여진 돈은 또다른 낭비에 탕진되고 만다.

정당한 노력을 치루고 힘을 들여야 벌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땀흘린 만큼 벌 수 있는 돈 만이 우리 사회의 돈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절제있는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되며 한푼의 돈, 하나의 물건을 아끼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내 돈 내가 쓰는" 사회가 아닌 "모두를 위해 같이 아끼는" 사회로의 탈바꿈을 의미한다.

♣生·活·經·濟